

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06년 10월 18일 규칙 제585호
일부개정 2011년 11월 10일 규칙 제699호
일부개정 2020년 9월 28일 규칙 제886호
(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자기간) ① 시장이 조례 제4조 각호에 따라 기금을 용자하는 경우의 용자기간은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 안에서 오산시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정한다.

② 용자기간은 용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.

③ 시장은 용자를 받은 기관(이하 “용자기관”이라 한다)의 자금 사정상 용자기간 만료일까지 용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당초의 용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3조(용자약정 등) ① 용자를 할 때에 시장은 용자기관의 장과 용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용자약정서에 의한다.

③ 용자기관의 장이 용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금인수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용자금의 이자) 용자금의 이율은 연 3.5퍼센트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 이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5조(용자금의 원리금상환) ① 용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3조에서 정한 용자약정에 따른다.

② 용자기관이 용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금융기관 연

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
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·이자·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.

④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.

제6조(예탁증서) 시장은 조례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예탁금의 이자) ①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해당연도 발생분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지급한다. <개정 2011. 11. 10>

② 예탁금의 이율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율을 각 기금별 출연지분율에 각 기금별 기간산정 후 계산하여 적용한다.

제8조(기간의 계산)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, 1년은 365일로 본다.

제9조(이익잉여금의 배당)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중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,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
제10조(위원회 운영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「오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를 준용하며, 이 규칙이나 「오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조례 제9조에서 정한 통합기금운용관 및 통합기금출납원의 직무와 책무는 「지방재정법」에서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 통합기금운용관 : 경리관·징수관
2. 통합기금출납원 : 지출원·출납원

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.

제12조(준용)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하여는 「오산

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20. 9. 28>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11. 10 규칙 제699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탁금의 이자에 관한 특례) 2011년도에 발생한 예탁금의 이자는 2012년 6월 30일에 지급한다.

부칙 <2020. 9. 28 규칙 제886호,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생략

② 「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「오산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자 금 인 수 영 수 증

일금 원정 (₩)

상기 금액을 「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용자금에 의한 인수자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.

 년 월 일

채 무 자 주 소
 성 명 (인)

오 산 시 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예탁금증서

일금 원정 (₩)

상기 금액을 「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예탁자 : ○ ○ 기금운용관 (인)

수탁자 : 오산시통합관리기금운용관(인)

오 산 시 장 인